
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					
당사자	성 명	허○행				
	주 소	충북 음성군 금왕읍 청평길 174-15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(결격사유)에 해당 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)에 따라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* 취소 * 기계가공(3급-1983000602호)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[별표 4]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부지방고용노동청	부서명	직업능력개발과	담당자	김태은
	주소	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(구월동) 인천고용센터			전화번호	032-460-4977
	일시	2024년 1월 3일(수) 15:00			장소	인천고용센터 소회의실(5층)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변호사			
		성명	김지아	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